

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재 명 

2026년 5월 12일

국 무 총 리 김 민 석

국 무 위 원
국 토 교 통 부 장 김 윤 덕

● **법률 제21630호**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3항 중 “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”를 “대통령령으로 정한다”로 한다.

제38조제5항 중 “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”을 “제37조제3항을”로 한다.

제39조제4항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한다”를 “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행법은 하자판정기준에 관한 기준을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의 대립 및 소송 등이 빈발하고 있는바,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,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,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에서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